

| 토 론 |

사 회 어 수 용
(대전중재부장, 대전지법 부장판사)



2009년도 정기세미나 토론내용

제1주제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의 책임범위

어 수 용 (사회자, 대전중재부장) : 제1주제 발표내용을 정리해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에 대한 특칙 조항인 17조의2는 개정 언론중재법 3장 1절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언론사 등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과 관련된 것이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은 조정과 중재에 대한 규정들이고, 4절은 소송에 대한 규정이다. 그런데 17조의2가 특별히 1절에 들어가 있다. 1절의 언론사 등에 대한 청구라는 것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에 청구를 한 경우 언론사를 통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발제자의 주장은 더 나아가서 이것을 조정의 경우에도 언론사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와 같은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발표의 중요한 전제이자 주장 사항이 되는 내용이다. 이는 발표자의 주장이 해석론일 수도 있고, 해석론이 아니더라도 입법론적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어 보인다. 더 나아가서 입법론적인 주장을 몇 가지 더 하셨는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인 포털뿐만 아니라 기사제공언론사까지 다 포함한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그에 관한 이유와 상당성에 관해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알림기능, 포털의 손해배상책임까지도 언급했다. 발제 내용의 여러 쟁점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시간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다.

일단 포털이 언론중재법의 규율대상으로 들어 온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일단락된 상황이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내용 등 주제 발표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포털 관련 부분까지 질문해도 무방하겠다.

윤 상 일 (서울제1중재부 위원) : 기사제공언론사가 다수의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다수의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뉴스서비스사업자 한 곳만을 골라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경우, 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제공언론사에 통보할 의무가 있지만 여타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는 통보할 의무가 없다. 개정 언론중재법의 입법취지를 보면 같은 기사내용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인데, 뉴스서비스사업자, 즉 여러 포털 간에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여 상 원 (발제자, 서울제1중재부장) : 그에 관해서는 법에 어떤 규정도 없다. 피해자는 한 포털에 대해 정정보도청구를 하는 것만으로 모든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고 싶겠지만, 법에는 다른 포털들도 피신청인으로 포함하는 근거는 없다. 다만, 기사제공언론사와 포털 간에 중재가 이루어지면 그와 동일한 전제계약을 맺은 다른 포털들에게도 정정이나 반론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면 법률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는 것 같다.

윤 상 일 : 해당 조항에 대해 입법론적으로 필수적 공동소송을 말씀하셨는데, 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면 기사제공언론사는 피신청인이 되겠지만 다른 뉴스서비스사업자도 공동 피신청인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여 상 원 :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포털 한 곳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다면 당사자의 의사는 명백히 소를 제기한 포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기사제공언론사와 포털은 특수한 관계에 있지만 포털과 나머지 포털 간의 관계까지도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기사제공언론사는 원천기사를 제공하고, 전제계약에 의해 포털은 그대로 옮겨 실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둘을 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넣는 것은 입법 정책적으로는 고려해 볼 수 있을지라도 그 나머지 포털까지 전부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임 경 록 (서울제6중재부 위원) : 뉴스가 언론중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제공언론사와 같이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받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뉴스를 다룰 때는 그만한 책임과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 있어야 한다. 단지 도매상에서 물건을 받아 중계해서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뉴스서비스사업자를 생각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유가 조정 결정 효력이 동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한 것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여 상 원 : 근대 민사법의 원리는 과실책임주의였으나 산업사회가 되고, 사회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묻는 제도가 많이 생겼다. 요즘은 조그만 사고로도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어떤 시설물이나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더라도 그 시설 자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인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일종의 사회보험이다. 보험이라는 것은 책임과 관계가 없지만, 보험에 들면 보험회사 잘못이 없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한다. 아주 오래 전에는 무과실책임주의였다가 사람들의 인지가 발달하면서 과실책임주의로 되었다가 다시 현재는 무과실책임주의로 되는 경향이 있다. 서울고등법원 판례 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서 포털이 기사작성에 아무런

관여를 한 바가 없고, 전재계약에 의해 기사를 전재했을 뿐인데 책임을 지게 한 것은 언론보도의 사회적 과급력이 상당히 크고 한 번 언론에 보도되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포털이 사실 영향력이 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가 있겠지만, 전재계약에 따라 서비스하기 때문에 기사에 아무런 관여를 한 바 없이 언론사에서 제공하면 기계적으로 신는 것에 불과한데 똑같은 책임을 져야하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포털의 생각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관이 오판을 하면 과실이 있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직무상 행한 일에 대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그러지 않으면 공익적인 일을 전혀 할 수 없다. 그래서 기사제공언론사는 자신이 취재하고 보도하여 관여가 되었으니 책임을 져야하지만, 언론 조정과정에서 포털에게 기사제공언론사와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포털에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고, 자신들의 책임이 기사제공언론사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때에는 중재부에서 참작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임 경 록 : 기사제공언론사의 기사가 포털에 실리면서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고려할 때, 피해보상의 측면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약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포털이 같은 기사를 부각시켜 반복해서 게재함으로써 그 피해가 확산될 수도 있고, 포털의 흥미 위주의 보도로 인해 피해의 양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피해구제 목적에서 보았을 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소 원칙적이고 법리적으로만 생각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신 용 석 (경기중재부장) : 발표자께서 포털의 뉴스서비스와 관련하여 무과실책임주의를 거론하셨는데, 현행법에서는 과실책임을 규정했다고 봐야할 것이다. 과실책임에 있어 기사제공언론사와 포털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인 것 같다. 기사를 생산했다는 측면에서 뉴스제공언론사의 행위책임도 크지만, 포털이 종이신문보다 영향력이 커져가는 상황이고, 손해확대라는 측면에서 과실을 인정한다면 포털의 책임범위가 오히려 커져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행위책임과 결과책임, 손해배상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할 부분인 것 같다.

여 상 원 : 법률적인 것과 심리의 실질을 구별해야 하는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임 위원님과 신 부장판사 말씀이 맞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2008다53812)을 보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사업자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

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은 기사제공언론사와 포털의 책임 범위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서 유추하면 포털의 영향력이 기사제공언론사에 비해 크며, 피해가 확산되기도 하는 만큼 언론사와 같이 책임지는 게 맞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포털과 기사제공 언론사의 전제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계약 내용을 구하지 못해 발제문에서는 더 이상 논의를 할 수 없었다. 계약상 포털은 기사제공언론사의 기사를 그대로 옮겨 실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사제공언론사의 기사를 선별하고 올리는 순서 등을 정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언론사와 포털사의 책임을 갈게 하는 것에 대해 의문점을 던져 놓은 것이다. 법률적으로 맞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중재 실무를 하면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김 은 실 (KTH파란닷컴 미디어서비스팀 뉴스파트장) : 포털사는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를 편집하거나 내용을 수정하거나 선택해서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포털은 언론사가 생성한 기사를 그대로 서비스하고 있을 뿐이다. 일부 기사로 인해 피해자가 생겨 소송이 제기되거나 조정신청의 대상이 되었을 때 포털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이유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들어오는 기사 모두 검열을 해야 하고 검열되지 않은 기사는 서비스할 수 없게 된다. 결국 포털은 소수의 검증된 언론사만 선택해 계약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또 검색 서비스에서도 많은 뉴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용자들이 기사를 검색하고 정보를 획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 동 훈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네이버의 뉴스캐스트다. 아웃 캐스트라고 해서 제목을 클릭하면 신문사 홈페이지로 가는 서비스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포털이 책임을 지게 되는지 묻고 싶다.

여 상 원 :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 포털 자체에 기사를 싣는 방식, 포털이 링크만 하는 방식, 검색을 통해 기사 저장장치에서 내용을 불러내는 방식 등이 있는데 모두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 포털이 기사로 가는 문을 열어준 책임이 있는 것이다.

정 동 훈 : 뉴스 캐스팅은 기사를 직접 레이아웃도 하지 않고, 저장도 하지 않으면서 언론사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시켜 주는 것인데, 이러한 것도 문제가 되는가.

여 상 원 : 포털에 올린 기사와 링크된 기사와 차이점을 둘 수 있을까 의문이다. 포털 때문에 그 기사를 볼 수 있게 된 점에서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김 현 성 (NHN 법무실장) : 이용자들이 포털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패턴이 크게 세 가지인데, 뉴스 캐스트, 네이버 홈과 같이 저장 공간에 있는 것, 검색 등이 있다. 뉴스 캐스트와 검색 뉴스는 알고리즘에 의해 기계적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저장하고 있는 기사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것에는 동의를 한다. 그러나 기계적 알고리즘으로 뉴스제공사업자에게 페이지가 넘어가는 경우에도 포털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또 하나 정정보도청구 알림 등에 대해 질문을 하겠다. 기계적 알고리즘으로 언론사로 넘어가는 기사는 해당 언론사에 통보만 하면 되고, 저장하는 기사에 대해서만 포털이 자체적인 표시를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여 상 원 : 개인적으로는 링크된 기사는 포털이 알림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 포털은 통보만 하는 것으로 끝이고, 기사제공언론사는 통보를 받게 되면 피신청인 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17조의2에서 기사제공언론사로서 알림표시를 할 의무가 생긴다고 본다.

김 현 성 : 판례에서 포털이 문제된 것은 레이아웃, 활자를 크게 강조한 것 등을 편집행위로 본 것이다. 지금의 문제점은 신문사에서 틀을 만들어 보낸 것을 네이버에서 그대로 싣고 있고, 클릭하면 신문사로 넘어가는 시스템인데도 네이버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포털사는 뉴스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런 점은 구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남 재 일 (대전중재부 위원) : 저널리즘 차원의 핵심 쟁점인 포털의 편집 책임 또는 뉴스서비스의 결과적 책임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 과거에는 포털에서 제목 배치 등의 편집행위를 했지만 현재는 편집을 전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바꾸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클릭할 수 있는 게이트를 열어준 것만으로도 편집이라고 본다. 다수의 독자들에게 기사를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상업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편집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포털은 자신들의 미디어 정체성을 말할 때, 언론사는 도매업자고 포털은 소매업자라고 말하는데, 내가 볼 때는 포털은 대형유통업자이고 언론사는 납품 업체다. 대형할인점에서 산 제품이 불량품이면 그 대형할인점에 책임을 묻지 제조업자에게 항의하지 않는다. 포털 입장에서 단지 게재했을 뿐이라고 하는데 이건 모순이지 않나 생각한다. 포털이 미디어로서 영향력을 행

사하는 저변에는 뉴스서비스를 함으로써 얻는 공적 공신력이 크다고 본다. 결과적으로는 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 은 정 (NHN 뉴스서비스팀 차장) : 뉴스캐스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네이버는 언론사 측에 공간을 제공해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편집하게 해줄 뿐이고 그것에 관여할 권한이 전혀 없는 내용으로 계약을 한다. 네이버가 뉴스캐스트 공간에 올라온 언론사의 기사를 판단하거나 제재하긴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과정 등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란다.

하루에 네이버에 들어오는 기사가 2만 건이 넘는다. 접속자가 많아 피해확산의 우려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있긴 하지만, 이용자들은 실시간 검색어 등의 노출을 통해 모니터링 되지 않은 기사에 접속하는 경우가 많다. 포털이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은 분명 있겠지만, 언론사에서 전송하는 기사는 포털이 수정, 삭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점 등 포털사업자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향후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제2주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에 대한 대법원 판결기준에 관한 연구

어 수 용 : 출판물과 관련한 명예훼손죄의 법률적인 구성요건에 관한 설명을 하셨다. 그 범위가 넓어 약간 요약해 보면, 우선 일반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민사문제와 형사문제로 나누어 설명하셨고, 특히 형사문제에 주목해 형법 307조에 규정된 일반 명예훼손죄를 언급하면서, 이 경우에는 310조에 의해 진실성, 공익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말씀하셨다. 반면 309조에 언급되어 있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310조의 진실성, 공익성이 적용이 되지 않는데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이후에 대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진실성과 상당성, 그리고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성립되지 않는 쪽으로 해석을 해왔다는 취지로 발표하셨다. 또 여러 판례를 언급하면서 명예훼손 관련 대법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더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신 용 석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 비방의 목적을 보다 명확한 판단 기준으로 일관성 있게 해야 하고, 그것은 언론의 자유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발표 내용의 취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타당하다 생각한다. 그러나 전제되는 사실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명예훼손의 민형사 소송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에 비해 손해배상을 받기 쉬운 민사사건이 많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민사사건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사건은 검사가 일단 한 번 걸러서 기소하기 때문에 불기소되는 사건이 훨씬 많다. 기소되는 사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만큼 민사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무죄율도 상당히 낮다. 전체 사건의 1%도 안 된다. 명예훼손죄에 있어 30%에 해당하는 무죄율은 굉장히 높은 무죄율에 해당한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사건마다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대법원 판결은 개별 사건의 상고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 방식이 헌법재판소와는 다르다. 개별사건마다 기준이 다 있을 수 없고, 그 사건에 대한 기준이 보이지 않으면 하급심 판결문의 살펴봐야 한다. 이미 하급심에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 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이 준 택 (SK커뮤니케이션즈 미디어서비스팀장) : 포털이 언론중재법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점 중 하나가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다.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경우, 기사를 쓴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후속보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한 예로 최근 한 신문사는 자사가 보도했던 중국산 콘돔에 탈크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자 자체적으로 관련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서 후속보도를 내보내는 등 나름대로 기사의 내용을 입증하려는 노력을 취했다. 이처럼 언론사는 후속 보도 등을 통해서 손해배상 이슈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포털은 자체적으로 기사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을 때 스스로 보도에 대한 확인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포털이 언론중재법의 대상이 되면서 일반 기업이나 정부기관 등이 보도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수 없는 포털만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을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린다. 포털의 경우에는 명예훼손 기사에 대해서 수정,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상당성과 진실성, 공공성을 입증해야 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입증책임도 해당 명예훼손 소 제기자가 아니라 해당 언론에서 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보면 포털에서 자구책을 강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 언론중재법이 시행되면서 포털만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이뤄질 경우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 준 석 (Daum 고객센터서비스기획팀장) : 최근 피해구제에만 국한된 법개정들이 있었다. 정보통신망법 44조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취하게 되는 임시조치에 앞서 적절한 소명이 없다보니 충분히 오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언론중재법의 표시의무와 관련해서도 소명이 충

분하지 않아도 포털은 신청을 받으면 표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면 결국 오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이다. 신청인이 주장하기 따라서는 옳은 기사에도 표시가 적용될 수 있고, 또 대기업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터져서 포털에 기사가 수백 건 전재가 되면 해당 기사마다 신청이 제기될 것이다. 대법원 가서도 번복될 수 있는 것이 명예훼손 이슈인데 언론중재법의 표시의무로 인해 신청만으로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남용 차단에 대한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여 상 원 : 알릴 표시는 언론중재법에 특칙으로 신설된 것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차이점을 말하자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기사 삭제는 소명이 있어야 하지만, 언론중재법에 의한 알릴 표시 이행은 신청자의 소명이 필요 없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의 표시의무는 청구가 있다는 자체를 표시를 하는 것이어서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언론중재법이 소명 없이 청구만으로 표시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재 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후진적인 해결방법이라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1964년 설리번 사건 이후 각 주의 명예훼손법을 통해서도 형사적으로 문제된 경우는 50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안다. 명예훼손은 형사적인 해결보다는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이러한 판단은 정서적인 차이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비방의 목적이라는 부분도 공 부하면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였다. 일단 비방의 목적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비방의 목적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점과 관련하여 진실 하면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명예훼손 여부의 판단은 우선 진실성을 가지고 볼 것인데 진실하다면 굳이 비방의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발제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장 호 순 (발제자,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일단 세계인권단체 데이터를 보아도, 명예훼손을 국가가 처벌하는 것은 후진적인 것이 맞다. 전근대적이고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인 것은 분명하다. 민주화가 될 수록 그런 부분들을 상호토론이나 반론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안 된다면 민사상의 배상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 부장판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명예훼손 고발이 상당히 많다. 논문 작성을 위한 판례를 준비하기 전에 언론에 보도된 명예훼손 고발사례만을 모아보았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정리하지는 못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보수와 진보 신문사가 갈려서 서로 고발한 경우가 많았다. 보수와 진보 그룹 간에도 서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 선거관련 후보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어도 고발한다.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서로 토론하고 반론하고 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가고 검찰에 가서 처벌해 달라고 한다. 이것은 보수나 진보나 큰 차이가 없다. 법의 문제 이전에 사회적

문제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으로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사문화되어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사용하라는 사회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있고, 그로 인해 일정 정도 검찰이 기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한 최근 미네르바, 피디수첩 사건을 보면 결국 그 희생자가 검찰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에서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을 검찰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기소를 해야 하고, 법원이 판단을 해야 한다. 어떤 판단이 나오든지 절반의 국민만 수궁하고, 절반의 국민은 수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법부, 법조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다.

대법원에서 개별 사건이기 때문에 기준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적이 타당하기는 하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문은 그러한 판결에 도달하게 된 사실과 법적 기준을 당사자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상당히 취약하다. 그것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얼마나 정당한지, 얼마나 수궁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다. 또 그러한 판결이 나와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검찰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기소를 했을 때, 그 기소는 부당하다 또는 적절하다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매우 취약하다. 일단 위법성 조각사유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도 적용을 해서 진실성과 공익성이 입증되면 형사상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굉장히 진일보한 것이다. 언론이 진실하게 공익을 위해서 보도를 하게 된다면 국가에 의해 처벌 받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깐 혹시 비방할 목적에 해당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언론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취재하거나 보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검찰의 기소를 국민이 불신하거나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 개인의 표현이나 언론의 보도를 탄압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우리 사법부와 검찰의 신뢰를 궁극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대법원은 일단 명예훼손과 관련한 큰 기준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에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현재 판결 이후에 실질적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했다면,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지를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게 해 주는 것이 법원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신 용 석: 비방할 목적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제한하는 요소로 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 그런데 고의라는 것과 법률적으로 말하는 목적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요소여서 판단하기가 실제로는 상당히 어렵다. 객관적인 사실들은 판단하기가 쉽지만 비방할 목적, 가해할 목적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의를 넘어서 가해의 목적까지 있다고 인정하는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는 나름대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목적범에서 보면 미필적 목적이라는 표현까지 쓴다.

확정적인 목적은 없지만 추론으로 목적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은 주관적 요소이고,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진실한 것이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심지어 두 사람의 관계까지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발표자께서는 여러 가지 분석은 해주셨는데 비방할 목적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은 내려주시지 않은 것 같다.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

장 호 순: 개인의 마음의 상태를 법원에서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우리 법원의 판례에서는 진실성과 상당성만 입증이 되면 비방할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본다. 나는 그것만 가지고도 일정 정도 충분히 일관성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을 판례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을 무시하거나 언급하지 않고, 진실 여부가 문제가 된 기사에 대해 왜 진실이라고 판단했는지, 어떻게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설명 없이 그냥 비방할 목적이 있다 또는 없다 이렇게만 나오는 판례들이 아직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 하나는 다른 학자들도 주장을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1964년에 미국 설리반 판결에서 나온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기준이 어떻게 보면 비방의 목적과 굉장히 부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 그냥 보도한다거나 진실 여부에 대해 무모할 정도로 개의치 않고 써버리는 것, 이 정도는 비방할 목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주변상황과 같이 판단해 보면 비방할 목적을 판단하는 데 무게를 둘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기준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큰 기준을 만들었다. 그것을 일관성 있고 세밀하게 각 사안별로만 적용해 준다면 일반 국민과 언론인들의 입장에서 개별 사안에 대해 처벌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어 수 용: 처벌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잘 모르면 굉장히 불안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진실성, 상당성, 공익성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모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한 가지 제안을 해보면,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받은 판결이 나오면 언론사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도를 많이 하고 자체적으로도 교육과 학습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대법원 판결에 그러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지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발표자께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다.

김 상 호 (중앙일보 사회부 차장):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매우 조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입찰과 관련한 건설비리 보도에서 중앙일보는 해당 건설사를 공개하지 않고 이를 동안 K건설로 썼다. 그러나 방송, 다른 신문에서 실명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계속 익명으로 써야하는가 하는 곤란함을 느꼈다. 나중에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 가더라도 정상참작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위안을 삼고 실명보도를 했다.

분명한 것은 과거보다 명예훼손 부분에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 재 형 (Daum 미디어사업팀 차장) : 정정표기 등은 가이드 라인을 만들거나 진행 과정에서 정리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포털같이 뉴스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자가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언론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다고 본다. 결국 편집에 의한 여론형성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었으면 한다. 미디어 다음 뉴스서비스 쪽에서 언론사 기사를 다 볼 수 있도록 계약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는 80개 사 정도 된다. 그리고 나머지 언론사는 사실상 링크만 서비스 하고 있고, 이렇게 검색 서비스만 되는 언론사는 약 500개 사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편집을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은 80개 사와 관련된 것이다. 뉴스서비스사업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의 여지가 없는 방식을 고안해 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언론사의 계약 조건과 수도 달라질 수 있다. 너무나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현재 링크 서비스만 하는 기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편집과 함께 유통의 역할에 대한 책임까지 부과된다면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힘들게 될 것이다.

지금 네이버가 하는 뉴스캐스트와 다음의 열린 편집도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에 중점이 있을 것 같다. 뉴스캐스트는 언론사가 모든 편집을 할 수 있게 프레임을 뚫어서 들어오는 경우인데 그것이 단지 네이버의 탑에서 보여지는 경우이다. 다음이 하고 있는 블로그 뉴스는 이용자의 판단기준에 따라서 기사 중요도를 따져줄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 기계적인 알고리즘에 의한 서비스인데 단순 서비스 제공 여부 및 편집 주체와의 관계에서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지, 다음의 경우는 이용자가 편집을 했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책임이 주어지고 뉴스캐스트는 언론사가 했기 때문에 언론사에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비스 자체의 기계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서비스사에 책임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유 종 현 (MBC 영상취재부장) : 원론적이지만 미국의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과 그 이전의 판례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컴퓨서브(Cubby v. CompuServe) 사건에서는 게이트키퍼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책임을 지지 않았고, 프로디지(Stratton v. Prodigy) 사건에서는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여 책임을 졌다. 미국이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가 확보되고, 사상의 자유시장을 만끽하는 표현의 자유 국가가 된 것은 있는 개인적으로 착한 사마리안법(Good Samaritan)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우리도 저작권법에 온라인서비스의 책임 면책에 관한 조항이 있다. 우리는 개별법에만 있지만, 미국은 포괄주의로 되어 있다. 그래서 법원에 재량권을 많이 부여해서 판례법으로 상당히 발전해 왔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두 미국 판례가 미국의 언론의 자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내에서는 이런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은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신 용 석: 이 자리에는 기자, 언론학자도 있고 중재위원은 기자, 학자, 판사 등의 전현직자로 구성되어 있어 개념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론이 진행되는 것 같다. 책임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언론중재법에는 크게 보면 네 가지 제도가 있다.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이 있는데, 이 중 책임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것은 손해배상밖에 없다. 정정보도는 진실하지 않은 보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면 당연히 정정을 해야 하고, 반론보도는 보도 대상이 된 사람에게 반론의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고, 추후보도는 무죄판결이 난 것이므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손해배상은 언론중재법의 특이한 제도가 아니라 일반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포털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뉴스캐스팅 등에서 포털이 직접 한 것은 없지 않느냐는 취지인 것 같다. 맞는 말이다. 불법행위는 행위책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한 것인지 따져보고, 만약 링크만을 한 경우는 링크 기사 자체로 명예훼손인 경우는 당연히 포털도 책임이 있겠지만, 기사 내용이 진실하지 않는 것이라면 기사를 생성한 기사제공사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포털은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책임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책임이라는 말을 정정보도, 반론보도 제도에 계속 쓰게 되면 의사가 서로 일치되지 않는다.

성 동 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협력팀장): 질문 가운데 답변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참고 말씀을 드리겠다. 포털에 정정보도 신청이 들어와서 뉴스제공 언론사에 통보가 됐는데, 같은 기사를 여러 포털들에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 나머지 포털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최근에 만들었다. 기사 제공 언론사가 포털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면 기사를 제공한 다른 포털들에 대해서도 통보를 하도록 했다. 기사를 제공하는 모든 포털에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 통보를 받은 포털사들은 알림표시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그것은 심리과정에 있어서의 피신청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를 필요가 있겠다.

어 수 용: 장시간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데 감사드린다. 마지막 마무리 순서로 한국언론학회 부회장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께서 총평의 말씀을 해주시겠다.

최 양 호 (한국언론학회 부회장,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두 분의 발제와 토론에 대해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다. 언론학자, 언론중재위원, 언론 현업에 계신 분들, 그리고 포털에서 나오신 분 등 여러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모이니 시각도 매우 다양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저널리즘 시각에서 나온 내용도 있고, 포털은 산업적 시각에서 생각하는 것 같고, 중재위원은 법리적인 시각에서 주로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나 포털에서 제공하는 링크 서비스,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

는 이용자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의 책임 여부를 따지는 법리적인 결정을 할 때, 법리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법을 적용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어떤 손해가 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이렇게 복잡하다고 한다면 포털 서비스의 모든 뉴스 검색 서비스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서비스가 제한된다면 결국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모든 법리적 해석이나 사회적인 판단을 할 때 이용자의 입장을 많이 고려하였으면 한다.

권 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 오늘 발제를 해 주신 두 분, 사회를 맡아 주신 어수용 부장님 그리고 활발하게 토론에 참가해 주신 참석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오늘 세미나를 준비한 언론중재위원회 관계 직원도 수고가 많았다.

오늘 발제와 토론이 유익했다는 생각이다. 우선 장호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문제는 아주 미묘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을 너무 광범위 하게 인정하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고,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면 소중한 개인의 명예, 프라이버시가 함부로 취급되는 결과를 빚게 되는 아주 어려운 문제다. 결국 양 쪽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조율해야 하고,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개인의 순수한 프라이버시 문제는 특별히 취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언론 보도를 보면 사건에 관한 기사가 굉장히 많다. 사건 중에는 순수한 개인의 사고, 사건에 해당하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많다. 프라이버시 문제를 너무 자주 보도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보도를 통해 사건을 특정을 하고, 이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명예를 침해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는 것이라면 해당 사건 보도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 공인 문제를 많이 언급한다. 공인, 공적 관심사는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사항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과거 역사적 경험에 비추보면, 공인, 공적 관심사는 전체주의 정권에서 많이 들고 나왔다.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 단체의식 등, 이런 배경에서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은 역사적 경험에서 얻을 수 있다. 공익이나 공적 이익,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문제는 언론의 자유와 관계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실무자들이 이를 항상 고민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을 좀 더 소상하게 제시할 수 있다면 대단히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한 가지는 대법원은 사건이 너무 많다. 1970년대에 조사했던 통계를 보면 영국의 대법원은 1년에 취급하는 사건이 50여 건밖에 되지 않는다. 50여 건의 사건을 가지고 판단을 하니 아주 상세하게 논의가 되고 그러한 논의는 구체적인 기준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통계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사건이 너무 많다. 자세한 논리를 제시하기 어렵다. 이런 사정을 일반 국민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하시리라 본다. 둘째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비추볼 때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구체적인 하나의 사건에서는 그 이야기가 타당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 사건의 내용이

조금만 달라지만 과연 그 기준이 타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이 조심스럽다. 대법원은 그러한 기준을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의 명제로 제시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

여상원 부장께서 언론중재법 17조의2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다. 실무진에서 매우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미디어 관련법이 국회에서 많은 논란을 빚어왔다. 작년에는 미디어 관련법들이 일괄해서 통과되지 못 했고, 금년으로 넘어와서 얼마 전 일부 미디어법이 타결되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은 미디어 관련법에 속해 있다가 빠져나와서 올해 1월에 먼저 개정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미디어 관련법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여야 간, 국민 간에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지만, 포털 뉴스를 언론 중재와 조정의 대상으로 하자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래서 여야 간의 심한 대립 속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 안만이 따로 빠져 나와서 결국 성공적으로 개정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여야 대립 논란 속에서 개정되다 보니 구체적인 각론의 문제에 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진행되지 못한 것 같다. 17조의2 이 조문 하나만 넣고 후속 조치에 관한 조문은 빠졌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문제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 그리고 학계와 실무자들의 협조를 받아 적절한 해석을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 번 법이 입법이 되면 개정하는 것은 시간도 걸리고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이것을 합리적인 해석에 의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또 이처럼 문제가 많은 조문은 우리에게 좋은 점도 제공한다. 당장 포털 사업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예컨대 포털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가 남발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소명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제기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 앞서 이런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 처음 헌법재판소가 생겼을 때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생기므로 해서 우리나라 헌법 교과서가 두 배 이상 커졌다. 헌법을 전공하는 교수님들이 헌법 관련 연구할 자료들이 많이 생겨서 헌법학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 외국에서도 대한민국 헌법, 헌법학, 헌법재판소 판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것은 법률학, 나가서 우리 법률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라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언론중재법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조문이 하나 생기므로 해서 우리 언론학회, 언론법학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하게 될 것이다. 언론학회 또 언론법학회에서는 좋은 연구 소재가 생긴 것으로 생각한다.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털 사업자들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언론학회, 언론법학회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며, 충분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은 전에 볼 수 없었던 열기를 가지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셨다. 토론내용은 중재위원회에서 잘 정리해서 학계나 실무에 계신 분들에게 좋은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배포하도록 하겠다. 오늘 세미나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